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017.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1
II.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6
III. 1단계 배출권 할당	7
IV. 2단계 배출권 할당	13
V. 시장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할당	16
VI.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17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념

- (계획명)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이하 “할당계획”)
- (목적 및 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 (계획기간) 제2차 계획기간 2018.1.1.부터 2020.12.31.까지(법 부칙 제2조)
- (주요내용)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부문·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상쇄기준 등(법 제5조)

배출권거래제 개념

- (개념)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 허용



-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감안하여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

가. 배출허용총량

-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 허용량

나. 배출권 총 수량

- (개념)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 또는 보유하는 배출권 전체 수량
 - 다만, 상쇄배출권 또는 해외 유입 배출권은 총 수량에서 제외
- (구성)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할당되는 '배출권 사전할당량'과 정부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합

$\text{배출권 총수량} = \text{배출권 사전할당량} + \text{예비분}$
--

- 사전할당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하고, 예비분 일부*는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
 - * 시장안정화 예비분 등은 제외
- (배출허용총량과의 관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거래·제출을 위한 단위로 환산*하면 '배출권 총수량'에 대응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1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톤CO₂-eq) 을 1 배출권으로 환산
- 다만, 예비분 일부는 배출허용총량과 별도로 산정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과 "배출권 총수량"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음

- (개념) ‘업체별 배출권 할당(allocation)’은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정해진 계획기간 중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 단위로 배분
- (체계)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요건에 따라 사전할당, 추가할당 등으로 분류
 - (사전할당)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법 제12조)
 - (추가할당)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 시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신·증설 시 배출권 할당(법 제16조)
 - (할당취소) 할당계획 변경, 할당대상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전체 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이 가동 정지된 경우 등에 既 할당한 배출권 취소(법 제17조)
- (최소 산정단위) 할당량 산정 및 관리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 할당대상업체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16년도 명세서*에 산정·보고·검증된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명세서
 - 다만, 소량배출사업장(3,000 톤CO₂-eq 미만)은 사업장 단위로, 소규모 배출시설(100 톤CO₂-eq 미만)은 시설군 단위로 관리 가능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

<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과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으로 구분(영 제12조제1항제3호) >

- ◇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근거로 배출권 할당(GF : grandfathering)
 -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적정 배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
 - ◇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 제품 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BM : benchmark)
 - 업체별 설비 효율성 차이를 고려한 **BM계수***를 사용하여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 * 제품 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산정한 값

❖ GF 할당방식 적용 업체별 할당량 산정 기본식 ❖

$$\text{이행연도별 할당량(GF)} = \sum \text{①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② 조정계수}$$

❖ BM 할당방식 적용 업체별 할당량 산정 기본식 ❖

$$\text{이행연도별 할당량(BM)} = \sum [\text{① BM방식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text{② GF방식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③ 조정계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9조 및 제11조, 별표1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할당 대상 온실가스 배출행위]

◇ 할당대상업체(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1. 의무적 할당대상업체

-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톤CO₂-eq) 이상인 업체
-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톤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업체
- ③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 (신규진입자)

2. 자발적 참여업체

-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할당 대상 온실가스(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3조제1항)

- ① 이산화탄소(CO₂), ② 메탄(CH₄), ③ 아산화질소(N₂O),
④ 수소불화탄소(HFCs), ⑤ 과불화탄소(PFCs), ⑥ 육불화황(SF₆)

◇ 할당 대상 배출행위(법 제2조제2호 및 기본법 제2조제10호)

1. 직접배출 :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것
2. 간접배출 :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

II.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①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단계적 수립 원칙

-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와 여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
- 제2차 계획기간 시작 전 제1차 이행연도('18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불확실성 완화

② 1단계 : '18년 배출권 우선 할당('17.12월)

- 할당대상업체의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등 고려
- *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각 년도 사전할당량 - 할당취소량 +
추가할당량"의 평균(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
- 유상할당(영 제13조),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BM) 확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GF)에 업체별 감축실적 반영 등은
업체별 확정적 할당량 산정이 가능한 2단계에서 적용

③ 2단계 : 제2차 계획기간('18~'20) 전체 배출권 확정 할당('18년)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 정책 사항 고려

III. 1단계 배출권 할당

1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 기준

□ (근거) 할당계획에서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을 정하도록 규정
(법 제5조제1항제3호)

□ (선정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배출량 측정 가능성,
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

○ (배출 기여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부문 및 업종으로서,

○ (측정 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이 가능하고,

○ (집행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 주체가 명확한 경우

□ (선정결과) 1단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은
5개 부문, 26개 업종으로 구분

※ 제1차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 및 업종 구분을 준용

※ '17년 할당계획 변경('17.1.) 시 부문 및 업종 구분 조정 결과 :

1) 발전·에너지 업종은 ①발전에너지, ②집단에너지, ③산업단지 등
3개 업종으로 분리 (산업단지 업종은 산업 부문으로 구분)

2) 유리·요업 업종은 ①유리, ②요업 등 2개 업종으로 분리

※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적용 부문·업종 중

'도로', '철도', '건설' 업종은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에서 제외

2

1단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 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전환(2)	발전에너지	351~352
	집단에너지	353
산업(20)	산업단지	05~08
	광업	10~12
	음식료품	13~15, 205
	섬유	16
	목재	17~18
	제지	19(191 제외)
	정유	20~22(205 제외)
	석유화학	231
	유리	232
	요업	233
	시멘트	241, 2431
	철강	242, 2432
	비철금속	25, 29, 313
	기계	261
	반도체	2621
	디스플레이	26~28(261, 2621 제외)
	전기전자	30
	자동차	311
	조선	61~63
	통신	45~47, 55~99(61~63 제외)
건물(1)	건물	36
공공·폐기물(2)	수도	37~39
	폐기물	49~52
수송(1)	항공	

*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부문·업종 분류 개편 검토

3 1단계 배출허용총량

□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으로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각 년도 사전할당량 - 할당취소량 + 추가할당량”의 평균(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

$$\text{1단계 배출허용총량} = \text{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 538,461\text{천톤(KAU)}$$

※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18년 배출권 할당량에만 적용

※ '19~'20년을 포함한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확정

4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에는 모든 부문·업종·업체에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GF) 적용

- 배출권거래제 전체 1단계 배출권 할당량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이 되도록 조정계수 산정
- 업체별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업체별 1단계 할당량 산정

$$\text{업체별 1단계 할당량} = \\ \text{업체별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조정계수}$$

$$\text{조정계수} = \\ \text{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전체 연평균 할당량 } 538,461\text{천톤(KAU)} \div \\ \text{업체별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총 합 } 632,171\text{천톤} = \\ \text{약 } 85.18\%^*$$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2단계 배출권 할당시 업체별 1단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 1단계 배출권 할당량은 2단계 할당량 결정 후에도 유지·보장

-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18년 배출권 증가 조정 필요 시 :
'18년 배출권 추가 할당
-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18년 배출권 감소 조정 필요 시 :
'18년 배출권 유지 (감소 조정은 '19~20년 할당량에서 실시)

※ 업체별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시 기준으로 고려되는
배출권 할당량은 2단계 할당량 기준

< 예시 >

- ① 2단계 '18년 할당량 > 1단계 '18년 할당량 :
증가분을 '18년 할당량으로 추가

(단위 : 만 KAU)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단계 할당량	1,000	-	-
2단계 할당량	1,200	1,200	1,200
연도별 배출권 보유량	1,200 (1,000+200)	1,200	1,200

- ② 2단계 '18년 할당량 < 1단계 '18년 할당량 :
1단계 '18년 할당량 유지

(단위 : 만 KAU)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단계 할당량	1,000	-	-
2단계 할당량	800	800	800
연도별 배출권 보유량	1,000	700 (800-100)	700 (800-100)

5 1단계 부문·업종별 할당량

□ 부문·업종별 할당량은 부문·업종 내 업체별 할당량의 단순 합

업종별 할당량 = 해당 업종내 업체별 할당량의 총 합
 부문별 할당량 = 해당 부문내 업종별 할당량의 총 합

(단위 : 천 KAU)

부문	업종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이행연도별 할당량		
			'18년	'19년	'20년
배출권 총수량			552,461	2단계 할당시 확정	
사전할당량		-	538,461		
예비분			14,000		
전환	발전에너지	282,627	240,732	2단계 할당시 확정	
	집단에너지	11,011	9,379		
산업	산업 단지	15,661	13,340		
	광업	876	746		
	음·식료품	2,849	2,427		
	섬유	3,106	2,645		
	목재	390	332		
	제조	7,282	6,202		
	정유	19,831	16,891		
	석유화학	58,022	49,421		
	유리	3,957	3,370		
	요업	2,531	2,155		
	시멘트	46,005	39,186		
	철강	103,544	88,195		
	비철금속	8,253	7,029		
	기계	985	839		
	반도체	13,092	11,152		
	디스플레이	11,628	9,904		
	전기전자	4,048	3,448		
	자동차	4,667	3,976		
조선	2,711	2,309			
통신	3,373	2,873			
건물	건물	4,255	3,624		
수송	항공	1,918	1,634		
공공·폐기물	수도	738	629		
	폐기물	18,811	16,023		

※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및
 업체별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미세 조정 가능

6 1단계 정부 예비분

□ 1단계 정부 예비분은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만 반영·적립

1단계 정부 예비분(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 =
제1차 할당계획 시장안정화 예비분 수준
14,000 천KAU

[정부 예비분 개요]

- ◇ (정의) 추가할당 및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법 제18조)
- ◇ (용도)
 - 신규진입자 및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할당(법 제8조 및 제9조)
 - 신청에 의한 추가할당 등(영 제21조)
 -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상 할당(법 제23조제2항제1호)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 및 조치방안(법 제23조 및 영 제30조)]

- ①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 ③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 ④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IV. 2단계 배출권 할당

1 배출허용총량 등 설정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 정책 사항과의 정합성 고려
- 계획기간 중 신·증설 시설에 대한 할당 방식 개선, 조기감축실적 예비분 미반영 등 제2차 계획기간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제1차 계획기간과는 다른 사전할당량·정부 예비분 배분 필요

2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방향

- 업체별 할당방식 개선
 - (GF 할당방식)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으로 제1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BM 할당방식)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BM 할당방식 적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투자·산업 혁신 유도
- * 제1차 계획기간('15~'17)에는 정유, 시멘트, 항공 등 3개 업종에 적용

□ 유상할당 도입

- (대상 업종) 무상할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유상할당

* ① 무역집약도 30% 이상,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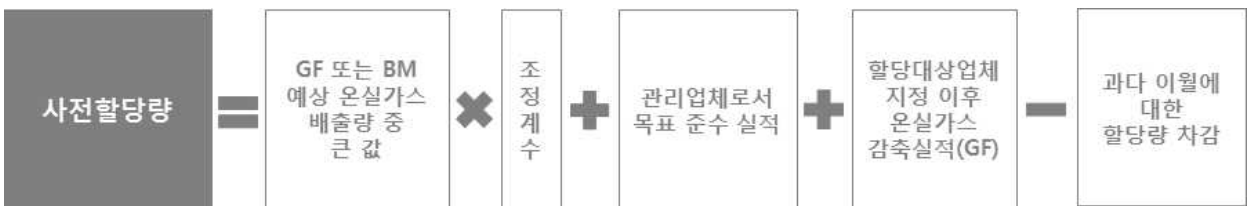
③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경우 무상할당

$$\text{무역집약도} = \frac{\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출액} + \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입액}}{\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매출액} + \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입액}}$$

$$\text{생산비용발생도} = \frac{\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배출권 가격}}{\text{해당업종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유상할당 비율) 할당대상업체별 할당 배출권의 100분의 3

[2단계 배출권 할당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기본체계]



* 유상할당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는 사전할당량의 97%만 무상할당

* 사전할당량 산정시 “관리업체로서 목표 준수 실적” 산정방법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9조, 제11조, 별표1 참조

[할당대상업체의 배출활동과 할당량 산정 범위]

-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으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해당 시설 배출량은 **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
 - * 사전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된 CDM 사업은 CDM 사업 등록 해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신.증설 등 추가할당 대상에서 제외
 - * 사전할당량 산정에 포함된 배출시설은 배출권거래법령 등이 정하는 할당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을 통한 상쇄배출권으로의 활용 대상에서 제외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3의 배출활동 중 **정유 업종의 석유정제활동***(수소제조 및 촉매재생)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
 - * 해당 배출활동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미포함

- ※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과 연계하여 포함 가능성 검토

- ◇ 제1차 할당계획 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14.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14.10.)을 통해 새로이 배출량 보고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에도 포함**
 - ① 석탄의 채굴, 처리 및 저장 등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
 - ② 식각·증착 시설에서의 N₂O 사용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
 - ③ 하·폐수 처리 등에 대한 배출계수 변화 등

- ※ 상기 지침 제·개정에 따른 할당량 산정 범위 증가는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의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고려할 필요

V. 시장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할당

- (근거)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 결정(영 제12조제1항)
- (적용방식) 할당대상업체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배출권 이월 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적용시점)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18.8월말 시점에 결정
 - 결정된 차감량은 ‘19~20년 할당량에서 차감하되, 2단계 할당에 따른 ‘19~20년 배출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

[차감량 산정 기준]

<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량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 초과 시 초과량만큼 할당량에서 차감 >

* 예)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 이월 시 → 초과분 8만톤을 할당량에서 차감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업체별 제1차 계획기간 최종할당량

○ 최종할당량 =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량 + 조기감축실적 + 권리의무 승계 - 할당취소량

※ 매수·매도한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미반영

◇ (과다 이월 판단 대상이 되는 배출권) 업체가 보유한 모든 배출권

○ 보유 배출권 = 업체별 최종할당량 + 매수·매도한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은 미반영

VI.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1 유연성 메커니즘 개요

- (개념) 할당대상업체가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배출권 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

*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법 제27조)

- (목적) 배출권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비용 최소화
 - (배출권 제출 방법 유연성 보장) 이행연도별 여유 또는 부족 배출권에 대해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여 미래의 생산·배출활동 등 경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응
 - (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 할당대상업체 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통한 실적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활용
 -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외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대한 감축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활동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 (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보) 할당대상업체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외 다양한 방식의 감축실적이 유통되도록 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확보

2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이월) 할당대상업체 및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당해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banking) 가능(법 제28조제1항)

* 제2차 계획기간의 경우 '19년 및 '20년이 해당

** 제3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인 '21년이 해당

○ 계획기간 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은 없으며,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 가능

○ 이행연도별 배출권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법 제32조)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에도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의 이월 규정 및 법 제32조의 자동 소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차입)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 차입(borrowing) 가능(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

* 그 외 사유로는 차입 불가

**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는 제2차 및 제3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차입이 가능하며, 제2차 이행연도는 제3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차입 가능

○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배출권 차입은 불가

* 제2차 계획기간 사용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은 불가(제2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인 '20년에는 '21년 할당배출권 차입이 불가)

○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5 이내(영 제36조제2항)

○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5 중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비율의 50%를 제외한 비율 이내(영 제36조제2항)

- (개념)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외부 감축실적)을 보유·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제출 등에 활용(법 제29조)
 - (의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감축의무 이행시 조직경계 내 자체 감축과 배출권 거래 외 감축활동 선택에 유연성 부여
 - (인정 기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한정(법 제30조)
 - 타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니어야 함 (법적 추가성)
 - 일반적 경영 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개선하는 사업으로 생산량 감소·유지 보수 등에 의한 감축은 제외
 -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함
 - CDM 사업으로 획득한 감축량은 중복활용 금지(영 제38조제3항)
 - 배출량 인증위원회(법 제34조)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할당대상업체별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영 제38조제4항)
 - 제2차 계획기간은 국내에서 시행하여 획득한 외부감축실적 및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하여 획득한 외부감축실적만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영 제40조제4항)
- * 해외에서 시행한 외부감축실적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